

세계지방자치동향



지방행정

- (한국)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방안
- (일본) 새로운 행정 서비스의 수요와 SDGs
 - 도쿄 에도가와구(江戸川区) SDGs추진 센터를 사례로 -
- (독일) 베를린 월세상한제의 폐지 과정과 시사점

지역개발

-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City of Los Angeles) “클린 스트리트 시스템(CleanStat)”
 - 스마트한 도시 위생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 수집 및 개방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방안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의 의의

- 문재인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위하여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 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기준 인건비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옴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가 주민 복리 증진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방 공무원의 행정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현행제도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통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국가공무원 임명(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 및 대통령령의 관여(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대통령령에 의한 권한대행 순서의 지정(지방자치법 제111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공무원의 배치(지방자치법 제112조 제5항 및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설치에 대한 대통령령의 관여(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 등이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통제에는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에 대한 제약을 들 수 있음
 -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기구 정원규정 제9조)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기구정원규정 제9조),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기구정원규정 제10조)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을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현장인력 확충이 실질적인 주민서비스의 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는 핵심성과지표를 도입하고 성과협약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인력충원 관련 주민의 삶과 직결된 3대 분야 10개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역점사업 전담 인력을 기준인력으로 신청 시 자율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핵심성과지표는 시도 및 시군구별로 적용지표가 상이함(아래 표 참고)
 - 핵심성과지표 관련 우수사례 및 지역현안 전담인력 성과협약에 따른 평가결과를 1:1 비율로 반영하여 기관포상, 차년도 인건비 산정 시 지역현안인력 추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표 1 | 지자체 조직관리 핵심성과지표

구분	핵심성과지표	협조부처
시도	1. (소방) 골든타임(7분) 내 소방차량 현장도착률	소방청
	2. (소방) 화재 인명피해 감소율	소방청
	3. (소방) 화재발생 감소율	소방청
	4. (생활안전) 감염병 원인 규명률	복지부(질본)
	5. (생활안전) 구제역 항체 양성률	농림부
시군구	6. (사회복지) 찾아가는 복지상담 비율	복지부
	7. (사회복지) 위기가구 사례관리 실적	복지부
	8. (사회복지)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	복지부
	9. (생활안전) 재난피해 감소율	행안부(안전)
	10. (생활안전) 재난상황보고훈련 목표달성률	행안부(안전)

- 또한 성과기반 시·도 자율신설기구 설치·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자체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기구 존속 및 폐지 또는 상시기구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 대응, 단체장 역점사업 시행 등을 위해 실·국·본부수 상한 20% 범위 내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하되, 2년 범위 내 존속기간의 성과에 기반하여 상시기구 전환 여부 결정
 - 자체평가를 하되, 객관성·전문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포함¹⁾
 - 성과지표²⁾ 달성여부, 행정수요의 지속성, 기능수행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중간평가를 하고

1)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기구정원규정 제29조에 따라 설치가능한 조직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2) 성과지표는 기구산설 시 설정하며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성하되 산출·결과지표 중심으로 평가시행

결과를 공유하여 모범사례는 전파하고, 부진사례는 컨설팅을 실시

- 이 밖에도 조직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조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정원관리와의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연계사무, 국가현안, 요청 분야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신규충원과 인력 배치를 실시하는 수시진단제도를 추진 중
 - 자치단체의 기능 및 인력 재배치를 효율화하기 위해 정원의 1~3%를 재배치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기준인력 증원 시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
 - 위원회의 기능 검토 후 통폐합,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 기구설치와 직급기준은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의 규정에서 벗어날 경우 시정조치 요구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방안 모색

- 최근 행안부 지침에 의해 도입하고 있는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지자체 조직관리 방안은 여전히 주로 정부 간 통제 방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주민에 의한 통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지표 및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자발적 행정통제
 - 기존 5대 지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지표 및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자정 작용을 강화함으로써 외부통제에 의한 관리감독 시스템에서 행정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의 선순환에 의한 정보환류시스템으로 전환
- 중앙부처의 국민참여 조직진단제도 지역 적용 가능성 타진
 - 현재 20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국민참여 조직진단 프로그램을 지역단위로 확산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의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에 참여하며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마련
 - 지역주민 기반 평가지표는 타지역과의 횡단적 비교분석이 아니라, 지역 내의 종단적 분석을 통하여 지역정보를 축적하고, 지역 간 조직진단 사례의 공개와 교류를 통하여 조직진단평가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예상됨

강영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 연구위원)